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1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상정
- 제14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7. 12. 11)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윤 준 의)

가. 제안이유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2007. 5. 11.)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및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세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는 시장이, 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세입징수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조례 전부개정 사유 및 공적 인정 절차는?	○ 세정발전과 지방세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기 위함.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적을 인정받아야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있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9호
의결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2007. 5. 11.)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세입징수포상금에 관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6조)
- 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시 및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및 지방세제에 관

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는 시장이, 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
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세입징수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첨 부** : 부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현행)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공적”이란 시 세입(지방세 수입·세외수입 등 모든 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 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 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

어 있는 재산

나.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다.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의 부동산

3. “특별조사계획”이란 「부천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미등기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기능직·임시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특별조사계획에 따라 탈루·은닉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탈세 등의 정보를 제보한 민간인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해당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
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제도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
상과 함께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
급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
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는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에서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에 관한 공적을 심
의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는 시장이, 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및 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제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신청) ①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의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 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	징수자		징수내역					체납자		확인자		비고
	직 급	성 명	구 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납 부 일	징 수 액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직 위	성 명	

※ 구분란은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를 기재하고, 비고란은 포상금청구(지급)액, 지급일 등을 기재함.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2호서식]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발굴세원		납세 의무자		징수 일자	확 인 자		비고
	직 급 (주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구 분	과 목 (세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직 위	성 명	
<p>※ 구분란은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기재하고, 비고란은 포상금액, 지급일 등을 기재함.</p>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부천시장(○○구청장)

발 신 :

참 조 : ○○과장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상금	비 고
		합 계	본 세	가산금		
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	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	미 등 기					
	탈루·은닉 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 증대					

- 첨 부 1. 과년도 미수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 세원 발굴 내역 1부

과년도 미수액 징수내역

과 장 (인)

징 수 자			징 수 액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합 계	본 세	가산금			

숨은 세원 발굴내역

과 장 (인)

부 과 자(제보자)			과 목 (세목)	발 굴 내 역	구 분	징 수 월 일	건 수	포상금 청구액	거래 은행 계좌 번호
소 속	직 위 (주소)	성 명							
※ 구분란은 미등기, 탈루·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외수입증대 등을 기록함.									

(현행 조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1974. 06. 16 조례 제127호
개정 1977. 02. 28 조례 제221호
개정 1989. 07. 13 조례 제984호
개정 1991. 08. 13 조례 제1149호
개정 1996. 07. 18 조례 제1435호
개정 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전문개정 2004. 06. 04 조례 제2022호
개정 2005. 01. 13 조례 제2059호
개정 2006. 05. 11 조례 제21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2.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직접독려에 의한 체납세징수 및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수색·인도명령·영치 등의 방법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미수액 일체징리기간(6월이내로 한다) 등을 통하여 미수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미수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3. “특별조사계획”이라 함은 「부천시 지방세무조사운영 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특별조사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미등기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게 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일반인
2. 특별조사계획에 의하여 탈루·은닉세원을 포착·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탈세 등의 정보를 제보한 일반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
4. 결손처분된 체납액중 소멸시효 이전에 미수금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회계연도말부터 1년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상 2년미만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2
3. 회계연도말부터 2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취득을 포착하거나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 의무발생일(등기일을 포함한다)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은닉된 지방세원을 포착하거나 탈세정보를 제보하여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5

7. 제3조제3호 규정에 의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 해당액의 100분의 10

제5조(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지방세 미수액 중 결손처분(부분결손은 제외한다)된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소멸시효 잔여연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1년이상 3년미만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8

3. 소멸시효 잔여연수가 3년이상인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6

제6조(지급한도) ①제4조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개인별 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1>

②제4조제7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최초발생연도 수납액에 한하며, 1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1.13>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는 세입업무담당국장이 되고, 구는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구 5급이상 공무원<개정 2005.01.13>

2. 지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8조(포상금 지급) ①시장(구는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해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해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01.13>

②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공무원제안규정, 예산성과금 세칙, 기타 법률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은 해당금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탈세정보를 제보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해당금액 부과 시에 지급한다.

제8조의2(대장비치) 시 및 구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과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01.13>

제8조의3(포상금 지급신청) 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구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01.13>

제9조(환수) ①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환급된 경우 해당 포상금에 대하여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원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01.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74. 6. 15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2. 28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13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8. 13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18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10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04 조례 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1.13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1 조례 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